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 | <b>장애 학생 및 다문화가족<br/>학생 지원 규정</b> | 문서번호 | 3-4-10        |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정일  | 2011. 12. 20. |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일  | 2020. 11. 01. |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페이지  | 1/3           | 관리<br>부서 | 학생처 |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교수학습을 지원하고,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 학생지원위원회(이하 “지원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이 규정에서 ‘장애학생’이라 함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.

② ‘다문화가족’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
1. 「재한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
2.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**제3조(위원)** 지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본 대학 교수와 사무처의 시설담당 직원으로 한다.
2.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, 임기는 보직재임 기간으로 한다.

**제4조(기능)**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장애·다문화가족학생의 실태확인 및 요구수렴에 관한 사항
2. 장애·다문화가족학생의 복지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장애·다문화가족학생의 교수학습지원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
4. 장애·다문화가족학생의 편의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
5. 장애·다문화가족학생의 학습, 대학생활, 취업에 관한 상담
6. 교직원 및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
7. 기타 장애·다문화가족학생 지원과 관련된 사항

**제5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,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6조(간사)**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처 직원을 간사로 둔다.

**제7조(회의)** 위원장은 지원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과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**제8조(회의록)**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 및 보관하며, 차기 회의 시 전회 회의록을 낭독하여 참석위원들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 | <b>장애 학생 및 다문화가족<br/>학생 지원 규정</b> | 문서번호 | 3-4-10        |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정일  | 2011. 12. 20. |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일  | 2020. 11. 01. |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페이지  | 2/3           | 관리<br>부서 | 학생처 |

**제9조(의결)** ① 지원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**제10조(협조기관 및 협조)** ① 장애·다문화가족학생 지원업무의 추진을 위해 총장은 장애·다문화학생의 행·재정적 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장애·다문화가족학생의 대학생활, 진로 및 학습지원을 위해 장애·다문화학생의 지도교수는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장애·다문화가족학생의 교수학습 환경과 대학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처 등의 행정부처는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비밀의 준수 및 장애·다문화가족학생의 보호)** 위원 및 협조기관은 장애·다문화가족학생의 인적사항 등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단, 공공기관의 요청에 관한 것은 예외로 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| <b>장애 학생 및 다문화가족<br/>학생 지원 규정</b> |  | 문서번호 | 3-4-10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제정일  | 2011. 12. 20.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개정일  | 2020. 11. 01.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페이지  | 3/3           | 관리<br>부서    학생처 |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